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제한 규정 신설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5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산·가공시설 등록 취소 요건 추가	3
2.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제한 규정 신설 및 부칙	8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취소 요건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을 한 경우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① ----- ----- ----- ----- ----- ----- ----- -----제1호 또는 제8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 7. (현행과 같음)
2. ~ 7. (생략)	
<신설>	8.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을 등

② (생 략)	<u>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 ·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 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4조제1항은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¹⁾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²⁾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 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현행법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 구분]

목적	위생관리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수 출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u>위생관리기</u>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수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참고자료 [생산·가공시설등 등록 현황] 참조

목적	위생관리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에 맞는 시설(제69조제1항)	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u>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제70조제1항)</u>
국내 소비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의 <u>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시설(제69조제2항)</u>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등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제70조제2항)</u>

- 현행법 제78조제1항4)은 이렇게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하여,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⁵⁾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4. 제7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6.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이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7. 생산·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생산·가공업자등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를 말함(제74조제2항).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수산물등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음.

[안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처분내용]

유형	처분	법적근거
등록시설에서 미등록시설 제품을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표시 또는 위장해 불법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현행) 규정없음	
	↓ (개정안) 생산·가공시설 등록취소	안 제78조제1항제8호

- 최근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고 있는 사실이 해양수산부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⁶⁾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시설은 물론 생산·가공시설등 전반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6) 해양수산부는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였음. 한편, 해당 업체는 FDA 등록시설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미국 ICSSL*신규 등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FDA 등록시설 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였음.

*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미국 주 정부간 패류 선적자 명부)

있고,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필요적 등록취소라는 처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를 현행법에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 유형, 그리고 등록 등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 등과 비교하여 임의적 취소의 형식으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현행법 및 개정안의 등록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이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생산·가공업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현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경우 + (개정안)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미등록시설 제품을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위장해 불법적으로 판매·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등록취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② ~ ⑤ (생 략)	<u>7호·제8호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9조제6호·제7호·제8호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적으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⁷⁾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1년간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경우 또는 ②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7) 제119조제6호·제7호·제8호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함.

[개정안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

등록제한 사유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 자	안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에 또는 제8호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u> 2. <u>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u>
제119조제6호·제7호· 제8호 또는 제120조제9호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0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7.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이는 최근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고 있는 사실이 해양수산부에게 적발되었으나, 이러한 업체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가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요청해 등록이 말소된 후⁸⁾ 재차 신규 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수산물 위생관리 절차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은 등록제한의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생산·가공업자등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이전에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요청해 등록이 말소되거나, 자진 폐업 신고 등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까지 재등록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는 등록 제한을 규정한 안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개정 규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나, 같은 등록 제한

8)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제도운영상 등록업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등록증을 반납하고 등록 취소 의사를 표명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을 말소하고 있음.

사유인 안 제74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바,

[안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적용례 유무]

안 제74조제1항의 등록제한 사유	안 부칙 적용례
(제1호) 제7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 자	적용례 없음
(제2호) 제119조제6호·제7호·제8호 또는 제120조제9호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안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제119조제6호·제7호·제8호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안 제74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례 등의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출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척)

국가별	구 분	국내 등록시설				
		'21	'22	'23	'24.12.12 기준	등 록 (관리근거)
합 계		4,552	4,181	4,247	4,172	
중국	소 계	1,393	1,035	1,017	1,05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가공시설	566	536	537	554	
	선 박	173	185	188	196	
	양식장	654	314	292	303	
베트남	소 계	343	314	328	3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가공시설	237	249	271	286	
	양식장	106	65	57	63	
인도네시아	가공시설	120	123	139	14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태국	가공시설	149	154	173	1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러시아	소 계	74	81	88	9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가공시설	68	75	82	91	
	선 박	6	6	6	6	
에콰도르	가공시설	39	39	46	5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그밖의 등록시설 (호주,사우디)	가공시설	10	10	15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일본	소 계	1,992	1,978	1,974	1,905	대일수출용납치 위생관리요령
	활납치양식장	682	670	673	592	
	냉장납치육 가공시설	2	4	4	4	
	납치수출업체	482	478	471	483	
	처리복어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이매패양식장	811	811	811	8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생식용생굴 가공시설	15	15	15	15	생식용 생굴 대일수출요령
E U	소 계	330	341	350	36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가공시설	132	138	146	162	
	가공선박	44	48	50	52	
	냉동선박	154	155	154	153	
미(FDA)	가공시설 (냉동굴)	5	6	7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 자료: 해양수산부